

준용도로 공고

「도로법」 제10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준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년 월 일

공고자

직인

1. 노선명(도선장 명칭):
2. 기점:
3. 종점:
4. 전체 길이:
5. 주요 통과지(중간기착지):
6. 준용도로의 지정 이유:
7. 비고

첨부서류

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